서울 재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183

제출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신월 빗물저류 배수터널"은 국내 최초의 대심도 저류터널로 빗물 저류시설에 대한 홍보와 자연 재난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위기 관리 대응에 대한 시민 교육이 필요함
- 나. 서울 재난체험관은 재난 발생시 사고 인지능력이 낮은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 학습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응 능력 향상과 행동요령 습득으로 안전의식을 높이는 체험 학습장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전문성이 필요한 민간위탁 사무로써
- 나. 전문 법인 또는 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종합운영 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시설개요

○ 사 업 명 : 서울 재난체험관 운영(신규)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5(목동유수지)

○ 준 공 일 : 2019.12.15 (예정)

- 규 모 : 지상 2층, 연면적 1,252 m² (건축면적 568 m²)
 - 1층 : 인포메이션, 홍보관, 디지털체험관, 디지털아카이브
 - 2층 : VR체험, 재난안전체험(홍수, 태풍, 지진, 쓰나미, 가뭄, 폭염), 종합 영상관(개인행동 리뷰 및 강평)

※ 옥상: 안전행동 요령 설명패널, 휴게실

- 위탁법인 : 공개모집
- 운영인력 : 6명 (센터장 1명 외 5명)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20.1.1. ~ 2022.12.31.(3년)
- 위탁사무
 - 서울 재난 체험관의 종합운영계획 및 추진
 - 서울 재난체험관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 재난교육 관련분야 연구조사, 대외 협력사업
 - 기타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요구 사무 등
- 위탁운영 예산 : 900백만원/3년 ('20년 298백만원)

※ 산출근거 ('20년 예산)

○ 인건비 : 187,477 천원

- 내용 : 기본급, 퇴직적립금, 사회보험(연금,건강,요양,고용,산재)

○ 운영비 : 110,215 천원

- 내용 :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청소 등), 공공요금, 행사운영 등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2(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제1항3호
 -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3조(안전교육)
 - 제1호 : 지역주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 실시
 - 제2호 : 시장은 교육을 위해 필요할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 위탁 가능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라. 민간위탁 필요성

- 체험관 관람 연령대가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다양한 흥미와 이벤트 연계 등 참여 유도형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경험과 운영전략 필요
- 체험관 프로그램 개발, 대외 홍보 협력, 재난분야 연구 조사 등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 및 지속 발전을 위한 전문 민간단체 운영 필요

마.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9년 제7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19.9.19.)
-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약칭 : 재난안전법)
 - 제4조제1항(국가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
 -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제1항3호 :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1항1호 :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 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제3조(시의 책무) 제1항: 시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시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
 - 제52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제1호 :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3조(안전교육)
 - · 제1호 :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 실시
 - · 제2호 :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 동의 및 보고)
 -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의회 (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년 예산반영

다. 합 의: 합의(예산담당관)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하천관리과 치수관리팀 이기승(☎ 2133-3897)